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3-60
----------	-------

제출년월일 : 2023. 5.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학령기 이후 배움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운영경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안 제5조~제7조)

마. 자문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8조~제9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 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4. 13. ~ 5. 3.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제7회 서울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수정 의결(2023. 5. 16.)

원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u>거주하는</u>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u>살고 있는</u>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 평생 교육사업의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비용추계기간 : 2023. 1. ~ 2027. 12. (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비 보조금	453,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3,000
	구비 보조금	100,000	103,300	106,709	110,230	113,868	534,107
	소계(b)	553,000	553,300	556,709	560,230	563,868	2,787,107
□ 총 비용(a-b)		553,000	553,300	556,709	560,230	563,868	2,787,107

- 비용: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 및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사업비

4. 재원조달 방안

가. 매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비 보조금 지원, 구비 10% 이상 매칭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임현경 (☎ 3153-1683)